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조달과 관련하여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수요기관이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계속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불용품의 범위에 ‘혁신제품’을 추가(안 제42조)

조달청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혁신제품을 지정·구매하여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 중임. 현재는 혁신제품 수요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시범사용한 후, 다른 중앙관서의 관리전환 수요가 없거나,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어,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양여

가능 대상에 ‘혁신제품’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전환 수요 및 매각 가능성과
관계없이 혁신제품 수요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43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3. ~ 12. 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중 같은 법 시
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계약을 통해 해당 수
요기관에게 공급하는 물품

제43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42조(불용품의 양여)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해당 수요기관에 게 공급하는 물품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매각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 (이하 “ <u>감정평가업자</u> ”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	제43조(매각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감정평가법인등</u> (이하 “ <u>감정평가법인등</u> ”이)----- ----- ----- -----

나 <u>감정평가업자</u> 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u>감정평가법인등</u>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연 락 처	(044) 215 - 5262